

학생생활준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학생이 학교생활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 학부의 학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학생증

제3조(교부) 입학절차를 완료한 학생은 장학복지팀에 방문하여 학생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26.)

제4조(휴대)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항시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학교관계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학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재교부) 학생증을 분실한 때에는 장학복지팀에 소정의 재발급비용을 납부하고 학생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26.)

제6조(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생증을 무효로 한다.

1. 학생이 졸업 또는 자퇴하거나 제적되었을 때
2. 학생증의 내용을 임의로 정정하였거나 학생증의 식별이 곤란할 정도로 훼손되었을 때

제7조(기타) 복학한 자 또는 재입학한 자는 복학 또는 재입학의 허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학생증 교부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3 장 집회, 게시, 광고물 · 인쇄물 배포

제8조(집회허가) 학생이 교내외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복지처에 비치된 소정양식에 집회내용을 기재한 후, 장소허가 담당자와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다음 표에 정한 제출기간 내에 학생복지처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05.24.)

3-5-1~2 제3편 행 정

구 분	제 출 기 일
동아리의 일반집회	7일전
교내 집회 및 행사	7일전
교외 집회 및 행사	14일전
타대학과의 연합행사	1개월전

※집회 및 행사 참가자는 본교에서 시행하는 안전메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 등의 부착 허가) 교내에서 학생이 광고물, 인쇄물 및 현수막 등을 붙이거나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복지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집회금지) 학생은 시험기간 1주일 전부터 시험 종료일까지는 교내외 집회와 행사를 할 수 없다.

제 4 장 학생씨클(동아리)의 구성, 등록 및 운영

제11조(구성) 학생이 학생씨클(동아리)을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학생씨클(동아리)의 조직은 지도교수 1인을 선정하여 각 학과 학생이 균등히 구성되어 총 2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학생은 씨클(동아리)에 2중으로 등록할 수 없다.

제12조(등록) ①학생씨클(동아리)은 각 학년도초에 동아리연합회에서 공고·지정한 기간내에 소정의 서류(학생복지처 비치)를 작성하여 동아리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아리연합회는 등록서류를 마감한 후 7일이내에 학생복지처에 제출한다. 학생씨클(동아리)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복지처장이 공고한 때부터 인정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씨클(동아리)은 등록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본 대학교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단체
2. 학칙에 반하는 단체
3. 교내외 질서를 문란시킬 염려가 있는 단체
4. 기존의 단체와 유사한 단체
5. 운영상 재정능력이 없는 단체
6. 정치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7. 기타 학생씨클(동아리)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제13조(운영) ①학생씨클(동아리)의 활동기간은 1학기초부터 2학기말까지로 한다.

②학생씨클(동아리)은 임원을 개선하거나 회칙을 변경한 때에는 7일이내에 동아리연합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등록신청기간 중에는 등록을 위한 집회나 공고 이외의 씨클(동아리)활동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등록된 씨클(동아리)중 신규씨클(동아리)은 당해 학년도에 동아리연합회에서 예산을 보조받을 수 없다.

제14조(활동정지 및 해체)동아리 활동이 불건전하거나 다수의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학칙에 위배되었을때, 총장은 동아리 활동정지 및 해체를 명할 수 있다.

제 5 장 운동경기참가

제15조(사전허가) ①학생이 대외 운동경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학생은 제1항의 허가없이 대외단체 운동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③정기시험기간 중에는 제1항에 정한 허가 외에 교무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학생이 대외운동경기에 단체로 응원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6 장 학생생활 일반준칙

제16조(신상변동의 신청) 학생은 입학시에 제출한 학생신상에 관한 변동(본적 및 현주소 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사항을 해당대학 행정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외부활동) 학생은 본교의 명예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유흥단체 등에서 일할 수 없으며, 학교수업시간과 중복되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는 부직은 가질 수 없다.

제18조(야간활동금지) 학생은 교내활동 중 도서관을 제외한 기타 장소에서 22:00시 이후에는 일체의 학교출입 및 야간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야간 교내활동 허가원을 학생처에서 교부받아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을 거쳐 학생복지처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위반자에 대한 처리) 본 준칙을 위반한 학생은 학생상벌에관한규정에

3-5-1~4 제3편 행 정

따라 처리한다.(신설 2015.05.26.)

제20조(고소·고발 사건의 사전 허가) 학생이 학내 구성원간에 발생한 사건과 사고를 사유로 외부기관에 학내 구성원을 고소· 고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복지처에 그 사유를 명시한 사유서를 제출하고 학생복지처장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신설 2015.05.26.)

부 칙

이 준칙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1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15년 0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16년 05월 24일부터 시행한다.